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20 년 월 일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당행" 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된 금리감면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 포함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매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 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

감면항목	감면조건	감면금리
ㅁ 급여이체	**매월** 당행에 등록한 **급여일자**에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당행 본인 원화계좌로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조건 입니다. **※재직회사가 변경되거나 급여일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급여가 이체되기 전에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 ( )%
ㅁ 적금상품 납입 월( )만원 이상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납입 월 ( )만원 이상	**매월** 당행 본인계좌 **적금** 상품 (외화, 펀드, 신탁, 퇴직연금 제외) 에 **납입**하거나 매월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납입**하는 조건 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속성 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1개월 이내에 적금 상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 ( )%
ㅁ [기본] 당행 제휴카드 월 ( )만원 이상 결제	제휴카드 :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계좌(통장)에서 인출되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연 ( )%
ㅁ [추가] 당행 제휴카드 월 ( )만원 이상 결제	제휴카드 :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계좌(통장)에서 인출되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기본] 당행 제휴카드 결제 항목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연 ( )%

감면조건 세부사항은 **「별표」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인)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5-06-0171(3-1) (2026.06개정)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약관-043호(2026.04.23)

「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

감면항목	감면조건	확인
급여이체	급여이체는 **매월 50만원**[주1]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주1) 아래 1의 방식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되며, 아래 2 및 3의 방식은 '월합산' 50만원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1. 손님이 직접 **'급여일'을 지정(등록)** 하고,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 (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주2] 가 포함될 경우 주2)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 건강보험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하며, 영업점 창구 통장거래 및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주3] 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주3)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 기준(50만원 이상)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2 및 3의 방식은 손님이 소속한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 등으로 재직회사가 변경되거나 급여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가 이체되기 전에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방법 : 당행 하나원큐 앱('급여일 등록/변경' 메뉴), 당행 고객센터 (1599-1111), 인근 영업점 방문 등]	채무자(본인) (서명/인)
적립식상품 납입	**매월 10만원** 이상을 당행 본인계좌 **적금** 상품에 납입하거나, **매월 5만원** 이상을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납입하는 경우 인정(납입 방식은 자동이체, 현금입금, 계좌이체 등 전부 인정) 됩니다. 1. **적금**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가입한 상품의 월 납입 합계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손님이 다수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 적금상품의 월 납입 합계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적금상품이 아닌 ISA, IRP, 펀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금상품은 원화적금만 인정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가입한 상품의 월 납입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년 주택드림 등을 포함하며 청약상품의 종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경우 전부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 아닌 일반청약상품(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납입 금액은 적금상품 납입 금액에 합산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5-06-0171(3-2) (2026.06개정)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약관-043호(2026.04.23)

<table>
<tr>
<td>제휴카드
결제</td>
<td>
매월 당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이하, 본인 원화계좌)에서 하나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며, 계좌(통장)에서 인출된 합계금액 기준입니다.
(본인 원화계좌가 아닌 외화계좌 및 다른 금융기관 계좌 등 제외)

1. 매월 합계금액 3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감면조건이 충족되어 [기본]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매월 합계금액 7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및 [추가] 감면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기본] 감면금리에 더하여 [추가] 감면금리도 적용됩니다.
(매월 40만원 인출된 경우 : [기본] 감면금리 적용 / 매월 75만원 인출된 경우 : [기본] 및 [추가] 감면금리 둘다 적용)

2. 매월 1일~말일까지 본인 원화계좌에서 인출된 하나카드 대금의 합계금액(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개인사업자 법인카드 등 합산)이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카드 결제일에 따라 카드사의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적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카드 결제일이 아닌 계좌(통장)에서 실제 인출된 일자가 속한 그 달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머니(하나금융그룹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하나머니 잔액이 부족하여 본인 원화계좌에서 하나머니로 자동충전된 인출금액(계좌 거래내역 적요란에 '하나머니결제'로 표기됨)은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계좌 거래내역 적요란 예시] 하나머니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table>
<tr><th>거래일시</th><th>구분</th><th>적요(통장표기)</th><th>출금액</th><th>입금액</th><th>잔액</th></tr>
<tr><td>2026.03.01</td><td>체크카드</td><td>하나머니결제</td><td>30,000</td><td></td><td></td></tr>
</table>
4. 선결제 : 카드 결제일에 상관없이 해당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인출된 그 달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본인 원화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 인정(카드사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및 영업점에서 현금 결제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5. 할부결제 : 카드 결제일에 상관없이 해당 할부금액이 실제 인출된 그 달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카드대금 9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매월 30만원씩 결제되는 경우, 각 30만원이 실제 인출된 그 달의 실적으로 인정)
</td>
<td>채무자(본인)

(서명/인)</td>
</tr>
<tr>
<td>공통사항</td>
<td>
매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며, 기준이 되는 실적 대상월은 아래와 같이 이자 납입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table>
<tr><th>이자 납입일</th><th>실적 대상월</th><th>예시</th></tr>
<tr><td>1일~17일</td><td>전전월 실적</td><td>이자 납입일 : 7월 10일
실적 대상월 : 5월(5.1~5.31의 합산)</td></tr>
<tr><td>18일~말일</td><td>전월 실적</td><td>이자 납입일 : 7월 25일
실적 대상월 : 6월(6.1~6.30의 합산)</td></tr>
</table>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중 이자 납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결산일에 이자가 납입되며 실적대상월은 '전전월 실적' 입니다.

※ '신규 주4)'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월 포함 2개월은 실적확인이 유예됩니다.
[예시] 1월중(1.1~1.31) 실행된 신규대출에 대하여, 1월 및 2월은 실적확인이 유예(실제 부수거래 감면조건 미충족시에도 실적 충족으로 간주) 되나, 3월중에는 부수거래 감면조건을 충족해야 항목별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
주4) 신규성 거래에는 채무인수, 대환, 재약정을 포함합니다.

※ 대출의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실적확인 유예가 없으므로, 매월 부수거래 감면조건을 충족해야 항목별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
</td>
<td>채무자(본인)

(서명/인)</td>
</tr>
</table>